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0.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계 개선 방안」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부과기준’,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불복절차’ 등을 마련하여 시민권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구체적으로 설정(안 제2조)

(현행)공공하수도로부터 300미터 이내 → (변경)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나.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자를 구분하여 부과(안 제16조)

(현행)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대상

(변경)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대상

다. 사용료 감면대상에 대한 포괄적 규정 삭제(안 제30조)

(현행)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변경)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라. 이의신청 및 결정통지 기간의 합리적 설정(안 제31조)

마. 과오납급 소멸시효 설정(안 제32조의2)

(신설) 사용료 및 수수료 소멸시효 3년, 그 외 징수금 5년 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민법」,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00미터”를 “직선거리 300미터”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 구역)을”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소멸시효)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단,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u>300미터</u> 이내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 ----- ----- ----- ----- ---- <u>직선거리 300미터</u> --.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u>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u>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 ④ (생략)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 ----- ---- <u>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u> 를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 8. (생략) 9. <u>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u> ② ~ ④ (생략)	제30조(감면 등) ① ----- ----- ----- ----- ----- -----. 1. ~ 8. (현행과 같음) 9. <u>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이의신청) ① (생략)	제31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개시 시기,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류식하수관로 및 분류식하수관로의 현황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소 관 부 서		하 수 과
입 안 자	과 장	변 상 용
	담 당	이 윤 환
	담 당 자	송 홍 경 (480-4513)